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84
----------	------

제출년월일 : 2009.09.3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명 개정 및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되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최근 집단으로 대량 사육되어 분뇨관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미관리 가축 중 개를 규제대상 가축으로 확대함.
 - 가축 :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
- 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

제정(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9.7.30 ~ 8.19(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③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축장 · 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경우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
 5. 일부제한지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3조(제한지역외 지역)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제한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2.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축산장려가 부적합한 지역
3. 인근 주민의 공중 위생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지구환경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지구환경과장 박 강 호
	담당·팀장 직위·성명	수질보전담당 최 현숙
	담당자 성명·전화	이 벽희 (행정 2245)

[별표 1]

가축사육제한지역(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동 범
전부 제한지역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일부 제한지역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

[별표 2]

농경용 및 농가부업의 가축사육범위(제2조제4항제5호 관련)

축 종	사육두수	축 종	사육두수
소·젖소	2마리 이하	양·사슴	5마리 이하
돼지	5마리 이하	닭·오리	10마리 이하
말	2마리 이하	개	5마리 이하

(주) 해당 축종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는 유사한 축종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u>별표3</u> 와 같다. ②(생략) ③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u>준농립지역</u> · <u>농립지역</u> 및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신설) 4. 일부제한지역에서 <u>농지법 제2조</u>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u>별표4</u> 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u>별표 1</u> ② (현행과 같음) ③ <u>녹지지역(자연, 보전, 생산)</u>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3 (현행과 같음) 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 5. <u>「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u>
제7조(제한지역 외 지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1~3 (생략)	제3조(제한지역 외 지역)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외의 지역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제8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다.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u>시행에 필요한</u>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가축사육제한지역(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가축사육제한지역(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동 별	구 분	동 별
전부 제한지역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파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전부 제한지역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파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일부 제한지역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동,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	일부 제한지역	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 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u>팔곡일동</u> , <u>팔곡이동</u> , 선감 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 도동
[별표 4] 농경용 및 농기부업의 기축사육범위(제6조제4항제4호 관련)		[별표 2] 농경용 및 농기부업의 기축사육범위(제2조제4항제5호 관련)	
축 종	사육두수	축 종	사육두수
소	2마리 이하	양	5마리 이하
돼지	5마리 이하	가금류	10마리 이하
말	2마리 이하	(신설)	(신설)
(주) 해당 축종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는 유 사한 축종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주) 해당 축종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는 유사 한 축종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84
----------	------

제안년월일 : 2009. 9. 18.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변경함(안 제4조).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 ----- ----- -----하여야 한다.